

의안번호	2125296
의 퇴 인	양향자 의원
회 답 일	2023.08.24.
추계번호	23C3710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의2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1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이하 이 조에서 “관할청”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u>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u> (제2항) 관할청은 해당 교원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u>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의 선임 또는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한 소송대리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u>을 할 수 있다.	의무규정
2	안 제15조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제1항)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행위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스톱킹범죄 행위 추가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 제14조의2는 관할청이 운영하는 법률지원단의 업무범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고 법률 상담외의 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 등’으로 규정하며, 관할청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소송 수행 시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법 제14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는 ‘법률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¹⁾ 및 각 시·도의 교육규칙에 따라 7명에서 35명(최대 인원 기준)²⁾이내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개정안 제14조의2는 법률지원단의 역할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및 법률 상담 ‘등’을 추가하여 법률지원단의 업무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추가될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고, 2023년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법률지원단의 규모가 상이하여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일률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또한 안 제14조의2제2항은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소송

1)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2조(법률지원단의 구성)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2) 강원도(7명 이내), 대구광역시(15명 이내), 광주광역시(30명 이내), 대전광역시(15명 내외), 울산광역시(7명 이내), 충청북도(15명 이내), 전라남도(15명 이내), 전라북도(15명 이내), 경상북도(10명 이내), 경상남도(35명 이내), 제주특별자치도(9명 이내), 세종특별자치시(7명 이내), 경기도(7명 이내), 부산광역시(10명 이내), 충청남도(20명 이내), 인천광역시(8명 이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지원단, 교원책임배상제도 내에서 운영된다면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 관련 지원 요청이 증가하거나 보상내역이 변경되어 보험 계약액이 증액될 경우 재정지출은 증가될 수 있음
- 참고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2023.08.)’에서 교육부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시도별 편차를 없애고 상향 평준화 하기 위한 ‘표준 모델안’을 개발·시도할 계획³⁾을 밝힘

□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행위’를 추가함

- 현행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1] 최근 5년간 침해유형별·침해주체별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현황

(단위: 건)

학 년 도	침해 주체	상해 폭행	협박	모욕 명예 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정보 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	공무 및 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 혐오감 유발 행위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 으로 부당 간섭	교원의 영상 무단 합성 배포	기타	합계
2018	학생	165 (7.4%)	65 (2.9%)	1,309 (58.3%)	15 (0.7%)	16 (0.7%)	13 (0.6%)	69 (3.1%)	164 (7.3%)	263 (11.7%)		165 (7.4%)	2,244 (100%)
	학부모 등	7 (3.3%)	16 (7.6%)	82 (3.9%)	1 (0.5%)	0 (0%)	3 (1.4%)	33 (15.7%)	7 (3.3%)	35 (16.7%)		26 (12.4%)	210 (100%)
2019	학생	240 (9.9%)	82 (3.4%)	1,345 (55.2%)	14 (0.6%)	24 (1.0%)	28 (1.1%)	126 (5.2%)	205 (8.4%)	238 (9.8%)		133 (5.5%)	2,302 (100%)
	학부모 등	8 (3.5%)	21 (9.3%)	112 (49.3%)	1 (0.4%)	0 (0.0%)	6 (2.6%)	16 (7.0%)	1 (0.4%)	42 (18.5%)		20 (8.8%)	207 (100%)
2020	학생	106 (9.8%)	38 (3.5%)	622 (57.5%)	12 (1.1%)	30 (2.8%)	23 (2.1%)	69 (6.4%)	107 (9.9%)	34 (3.1%)		40 (3.7%)	1,081 (100%)
	학부모 등	7 (6.0%)	10 (8.6%)	46 (39.7%)	0 (0.0%)	1 (0.9%)	4 (3.4%)	6 (5.2%)	3 (2.6%)	33 (28.4%)		6 (5.2%)	116 (100%)

3) 표준모델안은 “사안발생 및 분쟁단계에서는 분쟁 컨설팅 및 합의 조정, 위협대처보호서비스 지원을, 지자체 조사 및 경찰서 수사 단계에서는 분쟁 및 합의조정, 민·형사 변호사 선임비용보상, 위협대처보호서비스 지원, 상해치료비 및 상담비 지원, 심리상담 지원, 교육활동 손해(물품)비용 지원을, 검찰 수사 및 법원송치 단계에서는 형사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용) 보상 및 심리상담 지원을, 법원 재판 및 판결 단계에서는 형사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용)보상 및 심리상담지원, 무죄시 보상 및 배상, 유죄시 과실치사·상 관련 소송비용 보상 및 배상”을 제시하였음

학 년 도	침해 주체	상해 폭행	협박	모욕 명예 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정보 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	공무 및 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 협오감 유발 행위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 으로 부당 간섭	교원의 영상 무단 합성 배포	기타	합계
2021	학생	231 (11.0%)	60 (2.9%)	1,203 (57.3%)	19 (0.9%)	65 (3.1%)	67 (3.2%)	80 (3.8%)	200 (9.5%)	93 (4.4%)		80 (3.8%)	2,098 (100%)
	학부모 등	8 (4.7%)	19 (11.1%)	68 (39.8%)	3 (1.8%)	1 (0.6%)	3 (1.8%)	15 (8.8%)	7 (4.1%)	29 (17.0%)		18 (10.5%)	171 (100%)
2022	학생	347 (12.2%)	108 (3.8%)	1,611 (56.9%)	20 (0.7%)	107 (3.8%)	51 (1.8%)	139 (4.9%)	221 (7.8%)	96 (3.4%)	7 (0.2%)	126 (4.4%)	2,833 (100%)
	학부모 등	14 (6.9%)	24 (11.9%)	75 (37.1%)	0 (0.0%)	1 (0.5%)	5 (2.5%)	25 (12.4%)	2 (1.0%)	45 (22.3%)	0 (0.0%)	11 (5.4%)	202 (100%)

주 1) 기타 : 무례한 언행, 지속적 지시불이행, 부당하고 반복적인 민원제기 등

2) 학부모 등 : 학부모, 동료교사, 학교관리자, 행정기관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포함

3)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침해유형에 ‘교원의 영상 무단 합성 배포’를 추가하여 조사

자료: 국회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2023.7.의안번호 제22453호)

□ 개정안에 따라 ‘교육활동침해행위’에 포함될 행위가 늘어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해당 행위의 증가비율을 예측하기 어렵고, 교육활동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조치’등의 구체적 사업내용 및 소요비용 또한 교육청별로 상이하기에⁴⁾ 개정안에 따라 추가될 사업 및 예산규모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 참고로, 2023년 8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하여 침해학생 즉시분리조치 및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조치⁵⁾를 하고,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및 보호자

4)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지정되어 있으나, 이의 구체적 사업내용이 시·도별로 상이함. 참고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상담·조사 및 사안처리 지원,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및 학생, 학생 보호자에 대한 상담, 찾아가는 법률 상담 및 소송 업무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업무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도교육청, 교권 센터 변호사의 법률 지원, 직무 관련 스트레스 교원 심리상담 지원 및 사례관리, 교원 마음 회복 프로그램 운영(집단상담, 힐링프로그램, 센터 특화프로그램), 교육활동 보호 연수 운영,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 권역별 교육활동 보호 컨설팅단 구축 및 역량강화, 실태 조사 및 통계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5) 즉시분리와 관련하여서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하여 소속교원 협의를 통해 분리기간, 공간 등을 학교장이 결정하고, 교내 별도공간 마련, 분리기간 동안 교육자료 제공, 원격수업 등 방안마련을 하도록 하였으며, 우선조치와 관련하여서는 학생의 선도가 긴급할 경우 교내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등의 조치 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보호 후 추진받도록 추진 중이며, 국회 교육위원회에 관련 법안

에 대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의무화하며,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상기의 조치를 미이행시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가중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